

##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자 유의사항

(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)

□ 2023년도 1월 1일 편입자부터는 복무 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. (「병역법」 제37조제3항)

✎ 기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,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취득 후 전직하여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

□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 (「병역법」 제37조제4항)

✎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78조의4)

✎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
□ 다음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됩니다. (「병역법」 제41조)

✎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

✎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

✎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후 제한된 기간(2년+유예기간)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
□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른 병역지정업체(연구소)로 옮겨 근무하여야 합니다. (「병역법」 제39조제3항)

※ 학위 취득 전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85조제3항제2호의 승인전직 제한(시행령 개정 진행중)